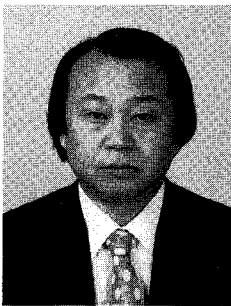


논 단

민간협동단체로서의 계(契)

1. 의 의
2. 개념과 발생배경
3. 단체별적 기능의 분류
 - 1) 지역단체로서의 계
 - 2) 특권단체로서의 계
 - 3) 산업단체로서의 계
 - 4) 상호부조·교유단체로서의 계
4. 역 사
 - 1) 계의 전신
 - 2) 계의 성립
 - 3) 계의 발달
 - 4) 이조후기의 계첩
 - 5) 계의 변화
5. 결 언



설 용 석
대성전기산업사 대표

1. 의 의

계(契)는 원시사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민간적 협동단체를 말한다. 계가 가장 발달된 조선시대에서 각종 계첩(契帖)을 통해서 볼 때, 계는 결계(結契) = 결취(結聚), 계합(契合) = 계회(契會), 계(契) = 회(會), 계(契) = 합(合) = 약(約), 계합(契合) = 회(會) = 취회(聚會), 회취, 회집(會集) = 결취(結聚) 등으로 표현되어 왔는데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결합> <여러사람이 많이 모임>이란 뜻이다.

계(契)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서약, 계약, 약속 : 계약서, 계약한 문서
「獨知之契也」《戰國策》「掌官契以治藏」《周禮》
- 2) 정의(情誼), 두터운 정, 우정(友情)
「金蘭之契」「論定金蘭之密契」《晉書》
- 3) 연분, 부부등의 인연
「少有道契」《司空圖》
- 4) 맞음, 합치함
「少與道契, 終與俗違」《詩品》

영어로는 "fraternity"라 할 수 있는데, 뜻하는 바는 공통의 목적이나 활동등을 위해 결성된 「조합, 동호회(同好會), 단체, 공제조합」을 말하며

fraternity society나 benefit society 따위이다.

2. 개념과 발생배경

이와 같은 회(會) 또는 회취(會聚)로서의 개념은 ㅁ을 즉 물 원래는 <모르>와 통하며 인간적 관계로서의 집단성과 결합성을 나타낸 본래적 단체개념이며 인적(人的)결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는 바로 한국고유의 공동체이다. 다시 말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협동단체를 지칭한다. 한국의 공동체로서의 계는 다만 그 형태로 보아 토지 소유자와의 관련에 있어서 토지공동체 또는 그런 관련을 가진 촌락공동체를 강하게 나타낸 독일 공동체인 (Gemeinschaft, Gemeinde)와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결합도(結合度)를 달리하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사용되는 영국의 공동체인 community라든가 공간적 표상이 제외된 일반적이고 인간적 결합체에 사용된 스페인의 Comunidad와 같은 공동체의 유형에 속한다. 한국 전통사회에 있어서 단체성을 나타낸 것으로는 계 외에도 보(寶)·도(徒)·접(接)·수(藪)·사(社)·회(會)·두레·모꼬지·회취·드일이·품앗이·맞이·ㅁ을 등이 있으나 이 모두가 다 인간적인 결합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행정적·윤리도덕적 기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다한 것이 바로 계였으며, 그것이 행하여진 공간적 넓이와 시간적 계속성에 있어 다른 어떤 공동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는 한국인이 회취(會聚 = 會集·모임)하며 그 속에서 호흡한 생활의 요람이며, 봉건사회의 유기적 조직이며 나아가 한국사를 관류하는 하나의 커다란 동맥이다.

한편 계의 기능개념에는 자치적 기능과 식리적(殖利的)기능을 그 본질적 기능으로 하면서 그것

을 토대로 저축적·고리적·협동협업적(協同協業的)·상호부족적·보험적 제기능(諸機能)이 파생되었다. 그러므로 공동사회적인 자치기능과 이익사회적인 식리기능이 결합된 특수한 공동체로서 성립·발전·변화·소멸의 기나긴 과정을 밟은 것이다.

사회발전의 형태는 언제나 순수한 공동사회(Gemeinschaft)의 단계뒤에 바로 순수한 이익사회(Gesellschaft)의 단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공동사회내부에 이익사회적 요소 및 관계가 생성되어 혼합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중핵이 공동사회적인 경우, 이것을 독일어로 “Vergemeinschaftung”이라 하는데, 나아가서 이익사회적 요소 및 관계가 확대되어 사회의 중핵이 되지만, 그 외각에 공동사회적 요소 및 관계가 남아있는 경우, 이것을 Vergesellschaftung이라고 할 수 있다. 두 형태가 더 역사적이며 또한 현실적이다.

계는 그 자체가 가진 본질적 기능에 입각하여 볼 때 Vergemeinschaftung에서 Vergesellschaftung으로 가는 단계에서 자라난 공동체인 것이다.

3. 단체별적 기능의 분류

계는 위와 같은 단체개념과 기능개념이 결합된 공동체인 만큼 각 시대의 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점은 당연히 단체별적 개념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의 기능을 단체별로 구분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대략 나눌 수 있다.

1) 지역단체로서의 계

여기에는 집안(家)·마을(里)·촌락(村落: settlement)보다 큰 지역의 세 범주로 나뉘고, 종계입의(宗契立議)·족계좌목(族契座目; 尙州朴氏契(1777))등의 종계·가문계·씨족계, 동계절목(洞契

節目(1701))등의 동계, 큰 지역성을 띤 밀양보민계(密陽補民契1823))·각종 대동계(大同契)등이 있다.

2) 특권단체로서의 계

여기에는 통제를 받은 전업적(專業的) 수공업 즉 공장(工匠)들의 조직인 경공장(京工匠)·외공장(外工匠)등의 공장계, 봉건상부층의 수요층을 위한 조달특권기관인 난전계(亂塵契)·전계(塵契)·육의전계(六矣塵契) 및 공물대납(貢物代納)의 공인계(貢人契)등이 있었다.

3) 산업단체로서의 계

여기에는 상업면에서의 보부상계(褓負商契)·일반상계(喪契)·박물계(博物契), 농업생산면에서의 마계(馬契)·우계(牛契)·농계(農契), 농사(農事)·수리사업의 보계(洩契), 어촌에 있어서의 어민계(漁民契)·어망계(漁網契), 금융면에 있어서의 식리계(殖利契)·무진계(無盡契)·일수계(日收契)·산통계(算筒契)·작과계(作罷契)·식산계(殖產契)등이 있다. 그리고 보험면에서 동중입헌(洞中立憲(1869))은 장례를 주목적으로 하였고, 화재보험의 목적도 이미 가미되어 있다. 향약계(1863)·가좌동 금송계좌목(可坐洞禁松契座目(1838))·농암송계좌목(籠巖松契座目(1851))·위친계약문(爲親契約文(1841)) 및 일반위친계·만년계(萬年契(1877))·정적첩(情積帖(1856))·오일계(五一契) 십이회좌목(十二會座目)등이 생명보험적인 것으로는 대표적이다. 상해보험적인 계로는 사계좌목(社契座目(1844))·일심계(一心契)등이 있으며, 화재보험에는 하동송계절목(河東松契節目)과 위의 동중입헌이 있다. 상장(喪葬)조합으로는 상뎃계(喪徒契)·상포계(喪布契)·향도계(香徒契)·사망계(死亡契)등이 대표적이다. 상뎃계의 일종으로서 민계(民

契);《반계수록(磻溪隨錄)》에서의 이계(里契)가 있다. 또 향약계의 기초인 여씨향약(呂氏鄉約)은 본래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겸한 성질을 띠었다. 이와같이 혼합된 보험기능은 비단 향약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위의 모든계에서도 공히 통하며 다를 바 없다.

4) 상호부조·교유(交遊) 단체로서의 계

여기에 상호부조적(相互扶助的)이라 함은 특정의 계를 지목해서라기보다는 계의 단체개념에 입각하여 당연히 계 전체가 친목과 상호부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교유단체로서는 사계(射契)·시대(詩契)·학계(學契)·동년계(同年契)·사마계(司馬契)등이 있다. 위의 단체별 기능별 분류에서 보는 바와같이 지역단체이면서 상호부조 교유단체인 것, 특권단체이면서 산업단체인 것, 산업단체이면서 지역단체인 것 등 엄밀히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상태에 있는 것이 그 태반이다.

4. 역 사

1) 계의전신

문헌상의 계의 시초는 신라경덕왕(景德王:742~764)때 강주의 불교신도 수십명이 미타사(彌陀寺)를 세워 만일에 대비하여 만들었다는 만물계이지만 여기서는 단지 단체성만 보일 뿐 어떤 기능이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길이 없다. 계가 회(會)의 성질을 띤 것은 만일회가 최초이며 경기도 봉은사(奉恩寺)의 비석에 있는 만일화와 동일한 것이다. 이는 또 고려시대의 광학회(廣學會:《稼亭集》卷 2)가 광학보(廣學寶(1946))와 동일하니 여기에서의 (회)는 (보)와 동일하다. 이와같이 볼 때 신라·고려시대의 보의 식리기능 또는 이자

부(利子附) 자본기능이 고려시대의 광범위한 사회조직인 계기능의 성립에 대해 선구적인 전신형태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시대에 하나밖에 없었던 만일계는 실은 보와 다름이 없는 제한된 사원관계 조직에 불과했다. 보는 사원에 전곡(錢穀)을 시납(施納)하고 사원에서는 이를 자본으로 삼아 남에게 대부하여 이식을 취하고 이를 잘 회전시킴으로서 불교사업에 이바지하였던 까닭에 이를 보라 하였다고 하는 것이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2) 계의 성립

우리나라의 이자형성과정을 보면 진급(賑給: 無利子現物施與)에서 진대(賑貸)로, 진대로부터 유이자 현물대여로 넘어가, 그것이 법정이자율의 단계에서 차차 고이자 대부로 전환되고 드디어는 봉건국가에 의한 공적(公的)고리대부 즉 공채정책안에 그 최고형태로 승화하면서 사회하부계층에 대한 중첩된 채무지배형태를 취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하부층에 광범한 식리성(殖利性)의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자치기능을 밑바닥으로 하여 위로부터의 고리성에 대응하는 식리성기능을 유발·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의 보(寶)의 성행과 공채의 지배가 민간에서의 독특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므로 계의 성립시기를 고려시대로 보는 견해가 타당할 것 같다. 고려시대의 계에는 정중부(鄭仲夫)때의 문무합판(合辦)의 문무계, 이색(李穡)의 아들 이양경(李良景), 권양촌(權陽村)의 아들 권충제(權悤制)가 부친에 따르지 못한 불명(不明)을 느껴 만든 등하불명계(燈下不明契), 《고려사》 심우경(沈于慶) 열전에 지적된 향도계(國絲結契, 燒香名番徒)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해동기영회(海東耆英會), 《陽村集》·동감계·동경계(同庚契)등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지역단체 또는 상호부조·교유단체 등으로 뻗어갔다.

3) 계의 발달

조·선초기에서 식리기능이 계=회=보로 혼합 표시된 좋은 예는 1432년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의 관인이 천보(泉寶)를 세워 청춘경로회(靑春耆老會)라 하였는데 그 기능은 계와 거의 같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 第44. 이와 같이 보(寶)의 존본취식(存本取息)이 계의 합전취리(合錢類取利)로 넘어간 것이 잘 명시된 것은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의 기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계 발달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유교홍통에 의한 향약의 진작, 길드(guild)조직의 발전, 납세정책의 강화, 산업의 발전과 장시(場市)의 보편화, 관청조달상인 단체를 위한 특권부여, 수공업자의 통제와 특권화, 대납(代納)특권의 부여 등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형성된 계는 호포계(戶布契)·군포계(軍布契)·향약계·공장계·전계(塵契)·공인계(貢人契)·객주계(客主契)·보부상계(保負商契), 행정위단위로서의 계(현종 4년(1663)의 한성호적장 및 육전조례(1865)) 등이 있다.

4) 이조후기의 계첩

이조후기의 83개 계첩을 분석하면 동계 17, 송계 11, 학계 5, 상계(商契) 10, 종계 11, 친목계 25, 산업계 2, 기타 4개이며 그것을 다시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1800년 이전의 것이 19, 1800년~1850년 사이의 것이 12개이고, 1850년~1910년 사이에 조성된 것이 44, 미상이 8로서 이것을 통하여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첫째, 부여 임춘군 입마대동계(林川郡 立馬大洞契(1800년 또는 1860년))의 624㎡ 구성과 황해

도 향약좌목(1893)의 721명 구성, 친목계중 갑술계(甲戌契(1874))의 397명 구성등의 특별히 많은 것을 제외하면 평균 구성계원은 동계 73명, 종계 53명, 송계 57명, 학계 53명, 상계 15명, 친목계 23명 등이었다.

둘째, 제조직의 지역성을 보면 동 단위가 36개, 면 단위 이상의 것이 8개,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18개, 미상이 21개이다.

셋째, 계에의 가입, 탈퇴에 관해서 추가가입을 허용한 것이 26개, 일체 허용하지 않은 것이 7개, 미상이 43개로서 개중에는 추가가입을 허용하되 스스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정한 예식을 행한 다음에 탈퇴가 가능한 것도 있다. 이 시기에는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게 되어가는 것을 엿 볼 수가 있다.

넷째, 신분의 고하에 따라 구분한 것이 20개, 구분이 없는 것이 63개로 이는 봉건적인 신분제의 해체를 뜻한다.

다섯째, 계의집회 빈도는 연 4회 이상이 6개, 연 2회가 31개, 연 1회가 25개, 미상이 35개로서 대체로 연 1~2회가 대부분이며 가장 많다.

여섯째, 계의 출자(出資)에 있어서는 지역계일 수록 분납출자형식(29개)을 취하고, 비지역적인 계일수록 일시출자형식(32개)이 지배적이다. 기타 수시수렴(26개)·수시출력(出力: 20개)도 많다. 이 시기에는 현금출자가 지배적이어서 우세하여지고 그 반면 관의 보조도 약간 있었다(3개). 단 대부방법에 있어서는 계원대부를 금한 것이 9건, 대부한도(限度)가 없는 것이 4건, 그 기한에 있어서는 6개월이 11건, 1년이 23건, 미상이 15건이다.

일곱째, 대부이자에 관하여는 장리(長利)가 7건, 월 7푼이 1건, 4~5푼이 12건, 3푼 이하가 7건, 미상이 25건이다. 여기에서 원리 상환은 채무 변제일 즉 계집합일에 원리금의 합계액을 상환한

다. 1911년의 대부업자의 금리는 함흥이 1.6~1할, 개성이 1.4~0.5할, 대구가 1~0.5할로서 대체로 고리대 방식이었고, 계 자체도 고리성을 띠고 있음이 일반적이었다. 또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에는 보부상패로 조직된 반동 단체인 황국협회(皇國協會)가 있어, 이 보부상단은 정부의 재정 결핍을 보충하고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지방을 순회하며 행상하던 편대 조직의 계이며 상무사(商務社)라 이름하였다. 또 호포계(戶布契)·군포계(軍布契)등은 1894년의 갑오경장에 의해 금납제로 전환됨으로서 그 역사적 사명을 마쳤다. 한편 육의전과 공물(貢物)제도를 폐지한 대원군의 정책에 따라 이조특권단체도 소멸해 갔다.

5) 계의 변화

공동체로서의 계는 자본주의의 성립과 더불어 붕괴할 운명에 놓여 있었으니 일제에 의한 자본주의 이식(移植)으로 계는 커다란 수정과 제재(制裁)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행정제도의 변화에 따라 동계등의 자치기관이 타격을 받고, 토지조차 사업에 의해 계 재산이 축소되거나 몰수되고, 학교제도 개편으로 학계가 그 사명을 잃고 송계도 축소되어 갔으나 금융조합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식산계(殖産契)는 육성되고 연명되었다. 무진계·식리계·사행계·작과계 등은 금압(禁壓) 대상이 되어 1922년 8월에 무진회사(無盡會社) 설립이후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해방 후의 계는 사실고리계로서 그 성격을 굳혀 왔다. 이런 성격은 인플레이션하에 있어서의 디플레이션 정책과, 디플레이션 정책에도 불구하고 양진(昂進)하는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모순속에서 그에 대응하는 사회관계로 되었으며, 그 자체의 경제순환성을 고정시켰던 것이다. 1947년 말부터 사설무진업(私設無盡業)의 족생(族生)과 때를 같

이하여 해방후 계의 특성을 조성함으로써 1955년 ~56년 도시계가 연쇄적으로 파탄을 일으켰다.

5. 결 언

1) 계(契·禊)는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전래해 오는 상부상조의 민간협동 단체이다. 그 기원은 삼한시대에까지 소급되나, 이 명칭으로는 고려후기에 사교를 목적으로 처음 성립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다양화되었는데, 가령, 친목과 공제(共濟)를 목적으로 한 종계(宗契)·혼상계(婚喪契), 경제적 곤란을 타개하기 위한 호포계(戶布契)·농구계(農具契) 등이 성립되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목돈을 만들기 위한 조직의 형태로 그런대로 비공식적으로 연명되고 있다.

2) 계는 1960년대에 들어와서 제1·2차 경제개

발5개년계획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과 함께 1965~68년 동안 크게 성장하여 이로말미암아 사채(私債)로 진전하였다가 1969년 이후의 부실기업정리에서 첫번째 쇼크를 받았고, 1972년 1월 17일 및 동년 8월 3일의 이자율 인하 정책에서 두번째 쇼크를, 다시 1972년 8월 3일에 선포된 긴급 경제명령에 의한 사채동결(3천 500억원)로 세번째 쇼크를 받아 결정적 종말단계에 들어섰다. 한편 농촌에서의 농민의 협동행동체계의 그 원성(농업협동조합과 계)은 농협에 의한 일원화작업으로 여지없이 농촌계 역시 소멸단계에 들어갔다.

3) 그리하여 중국에는 무진회사(無盡會社)로 흡수되고 이는 다시 상호신용계(相互信用契), 상호신용금고(相互信用金庫)로 발전하였으며, 서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특수은행으로서 1962년 국민은행(國民銀行)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전안

社 告

회사동정 및 신제품소개 무료게재 안내

월간 『전기와안전』에서는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회사동정 및 신제품소개를 다음과 같이 무료로 게재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회원사동정 : 200자 원고지 5매이내 또는 보도자료
2. 신제품소개 : 200자 원고지 5매이내(제품 사진포함) 또는 보도자료
3. 제 출 처 :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9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연구개발부

전화:(02)579-3291~5 팩스:(02)578-3640

4. 원 고 마 감 : 매월 20일까지